

| | | |
|---|---|---|
| 제2025-93호 2025년 10월 23일(목) | 시  보 여수시 |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 | | |
|----------|------------|--|---|
| ○ 여수시 고시 | 제2025-435호 | 여수죽림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안(에 따른)지형도면 | 1 |
| ○ 여수시 고시 | 제2025-437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 2 |
| ○ 여수시 고시 | 제2025-438호 |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3 |
| ○ 여수시 고시 | 제2025-439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 5 |
| ○ 여수시 고시 | 제2025-441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 6 |

공 고

| | | | |
|----------|-------------|---|----|
| ○ 여수시 공고 | 제2025-2903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여수 학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 7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018호 |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여서동 824-2) | 17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025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YP-3PROJECT] | 18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027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 28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028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 33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029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 35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050호 | 거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폐수처리장 CAPA_UP공사] | 37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052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취소 | 47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053호 | 전문건설업 등록(주)내일건설 | 48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054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여수 학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 49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056호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 71 |

| | | | | | | | | | |
|----------|--|--|--|--|--|--|--|--|--|
| 회 | |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
인가(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5-397호(2025. 10. 16.)]된 여수 죽림1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 10. 21.

여 수 시 장

1.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2. 관계 도서는 여수시 공영개발과(061-659-457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5-43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변경일자) | 점용·사용 장소 | 면적 | 허가받은 자 | | 목 적 | 변경사항(기간) | |
|-----------------------------|-------------------------------|------|------------------|-----|-----------------|---------------------------------|---------------------------------|
| | | | 주 소 | 성 명 | | 변경 전 | 변경 후 |
| 2015-042 (2025. 10. 17.) | 여수시 오천동 산 192-1 지선 공유수면 | 4.5㎡ | 여수시 망양로 482-9 | 김종명 | 해수온반용 인수관 설치 | 2020. 9. 7. ~ 2025. 9. 6. | 2025. 9. 7. ~ 2030. 9. 6. |

2025. 10. 20.

여 수 시 장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10. 23.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처리장(소각시설) 설치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

가. 성 명: (주)와이엔텍 대표 박지영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232(월내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여수국가산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 및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장(소각시설) 부지 조성

나. 사업의 개요: 부지조성 17,395㎡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 252번지

나. 면 적: 17,395㎡

5. 사업시행기간

가. 착수예정년월일: 2025. 10.(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나. 준공예정년월일: 2026. 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연번 | 위 치 | 지 번 | 지 목 | 지 적(㎡) | 신청면적(㎡) | 소유자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명 | |
| 1 | 월내동 | 252 | 장 | 24,092 | 17,395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232 (월내동) | (주)와이엔텍 | |

7.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27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일반 및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 월내동 252번지 일원 | - | 증) 17,395 | 17,395 | - | |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
| 27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신설 - 면적 : 17,395m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시설) 설치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

8.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5-43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 준공검사 신청자 | | 점용·사용장소 | 허가면적 |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 공사내용 |
|------------------------------|------------------|------------------|-------------------------|------|-----------------------|-----------------------------|
| | 주 소 | 성 명 | | | | |
| 2025-2 (2025. 1. 23.)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 화정면 개도리 1447-14번지 일원 | 721㎡ | 2025. 10. 20. | 화정면 개도 여석항 간이부잔교 설치공사 |

2025. 10. 20.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5-44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변경일자) | 허가기간 | 점용·사용 장소 | 면적 | 허가받은 자 | | 목적 | 변경사항(구조물) | |
|-----------------------------|---------------------------------|--------------------------------------|--------|--|-----|-----------------|---------------------------------|--------------------------------|
| | | | | 주소 | 성명 | | 변경 전 | 변경 후 |
| 2025-016 (2025. 10. 20.) | '25. 6. 26. ~ '30. 4. 30. | 돌산읍 우두리 산 251-3(포락지) 및 지선 공유수면 | 3,794㎡ | 전라북도 익산 시 익산대로 8 길 57(인화동1 가) | 김은향 | 해수온반용 인수관 설치 | 사석쌓기 (H 0.8-4.9m L: 141m) | L형옹벽 (H 3.0-7.6m L=141m) |

2025. 10. 22.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5-290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여수시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 학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한국토지신탁

다. 시 공 자 : 진흥기업(주)

라. 감 리 자 : (주)바소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학동 75-2번지 외 3필지

2) 대지면적 : 3,977.64㎡

3) 연 면 적 : 55,133.96㎡

4) 층 / 동 : 지하5층, 지상39층/2동

5) 용 도 : 공동주택(278세대), 근린생활시설

6) 공사기간 : 2025. 9. ~ 2029. 6.

7) 순공사비 : 108,323,471,000원

8) 안전점검 비용 : 166,057,000원(VAT 별도)

바. 건축허가일 : 2022. 9. 30.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구분 | | 점검항목 | 비고 |
|--------|--------------------------------------|-----------------|----|
| 1종 시설물 | 건축물 | 1종 시설물 건축물 정기점검 | |
| | | 건축물 초기점검 | |
| | | 10m 이상 굴착공사 |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 | |
| | 항타 및 항발기 | | |
| | 타워크레인 | | |
|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 |
| |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 |
| | 높이가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 |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RCS) | | |
|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 | |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148호

나. 결정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 평가항목 | 기 준 | | | 심 사 방 법 |
|------|--------|-------------------|---------|-------------|
|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 수행능력 | 30점 | 20점 | 10점 | 배점=총계 X 배점률 |
| 수행가격 | 70점 | 80점 | 90점 | |
| 합 계 | 100점 | 100점 | 100점 | |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10. 20.(월) 10:00 ~ 10. 27.(월)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부가세 별도 금액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5. 10. 29.(수)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점수가 동일 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5. 10. 30.(목) ~ 11. 3.(월) 16: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 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11. 4.(화) 10:00~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과(☎061-659-41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끝.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신청 사업명 | |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 | |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 수수료 없음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 | | 비고 |
|-----------------------|------------|---|--------|-------------------|---------|----|
| 1. 참여 기술인 | 50 | 소 계 | | 50 | | |
| | |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 | | |
| | |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 | | |
| | |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40 | 소 계 | | 40 | | |
|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 25 | | |
| |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 | 15 | | |
| 3. 점검·진단 평가결과 | 5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 | 5 |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 · A- 이상 | | 5 | | |
| | | · BBB- 이상 | | 4 | | |
| | | · BB- 이상 | | 3 | | |
| | | · B- 이상 | | 2 | | |
| | | · CCC+ 이하 | | 1 | | |
| | | · 미제출 | | 0 | | |
| 총 계 | 100 | 구 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 | | 배점률 | 30% | 20% | 10% |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 평가항목 | 세부기준 및 배점 | | | 비고 | |
|------|----------------|--------|-------------------|----|---------|
| |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 5천만원 미만 |
| 제안가격 |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70 | 80 | 90 | |
| |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65 | 75 | 85 | |
| |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60 | 70 | 80 | |
| |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55 | 65 | 75 | |
| |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50 | 60 | 70 | |
| |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45 | 55 | 65 | |
| |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40 | 50 | 60 | |
| |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35 | 45 | 55 | |
| |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 30 | 40 | 50 | |
| |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 25 | 35 | 45 | |
| |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 20 | 30 | 40 | |
| |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 15 | 25 | 35 | |
| |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 10 | 20 | 30 | |

1.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2.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절대값이 같을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에 우선순위 부여
3.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 평가항목 | 기 준 | | | 심 사 방 법 |
|------|--------|-------------------|---------|-------------|
|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 수행능력 | 30점 | 20점 | 10점 | 배점=총계 X 배점률 |
| 수행가격 | 70점 | 80점 | 90점 | |
| 합 계 | 100점 | 100점 | 100점 | |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 | | |
|------|---------------|---|--------|------------|
| 가격내용 | 사업명 | | | |
| | 제안가격 | 금 | 원정(₩ |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0. 21.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유(경작)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경작) 원상회복 명령
3. 공고기간 : 2025. 10. 21. ~ 2025. 11. 3.(14일간)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고대상 : 여수시 여서동 824-2번지

| 행위자 |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비고 |
|-----|-----------------|----------|----|
| 미상 | 여수시 여서동 824-2번지 | 무단 경작 | |

7. 송달내용
 - 공고 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유재산 무단점용한 행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원상회복(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2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우리 시 관내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일
여수시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YP-3 PROJECT

나. 건 축 주 : LX MMA

다. 시 공 자 : 하이테크엔지니어링

라. 사업개요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62-4번지

2) 대지면적 : 41,599.7㎡

3) 건축면적/연면적 : 13,638.79㎡ / 6,844.79㎡

4) 용도/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등

5) 공사기간 : 2025. 5. ~ 2026. 12.

6) 공 사 비 : 35,200,000,000원

7) 안전점검 비용 : 6,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높이가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공사 : 정기안전점검 2회

- 높이가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정기안전점검 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148호

나. 결정방법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
| 수행능력 | 10점 | 평점=평가점수 X 10% |
| 수행가격 | 90점 | |
| 합 계 | 100점 | |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10. 20.(월) 10:00 ~ 10. 24.(금)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부가세 포함 금액**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5. 10. 27.(월)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5. 10. 29.(수) 17: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

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제출)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서식 2]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10. 30.(목) 10:00 ~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산업지원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공고문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공고문에 명시된 과업범위의 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내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아.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산업지원과(☎061-659-3795, 심하영 주무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4. 서약서 1부. 끝.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신청 사업명 | |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 | |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 수수료 없음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 사업수행능력

|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 | 비고 | | | | | | | | |
|-----------------------|------------|---|---------|----|-----|--------|-------------------|---------|-----|-----|-----|-----|--|
| 1. 참여 기술인 | 50 | 소 계 | | 50 | | | | | | | | | |
| | |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 | | | | | | | | | |
| | |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 | | | | | | | | | |
| | |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 | | | | | | |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 | | | | | |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40 | 소 계 | | 40 | | | | | | | | | |
|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 25 | | | | | | | | | |
| |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 | 15 | | | | | | | | | |
| 3. 점검·진단 평가결과 | 5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 | 5 | | | | | | | |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 · A- 이상 | | 5 | | | | | | | | | |
| | | · BBB- 이상 | | 4 | | | | | | | | | |
| | | · BB- 이상 | | 3 | | | | | | | | | |
| | | · B- 이상 | | 2 | | | | | | | | | |
| | | · CCC+ 이하 | | 1 | | | | | | | | | |
| | | · 미제출 | | 0 | | | | | | | | | |
| 총 계 | 100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25%;">1억원 이상</th> <th style="width: 25%;">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th> <th style="width: 35%;">5천만원 미만</th> </tr> <tr> <td>배점률</td> <td>30%</td> <td>20%</td> <td>10%</td> </tr> </table> | | | 구 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배점률 | 30% | 20% | 10% | |
| 구 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 | | | | | | | |
| 배점률 | 30% | 20% | 10% | | | | | | | | | |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 평가항목 | 세부기준 및 배점 | | | | 비고 |
|------|----------------|--------|-------------------|---------|----|
| |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 제안가격 |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70 | 80 | 90 | |
| |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65 | 75 | 85 | |
| |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60 | 70 | 80 | |
| |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55 | 65 | 75 | |
| |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50 | 60 | 70 | |
| |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45 | 55 | 65 | |
| |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40 | 50 | 60 | |
| |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35 | 45 | 55 | |
| |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 30 | 40 | 50 | |
| |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 25 | 35 | 45 | |
| |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 20 | 30 | 40 | |
| |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 15 | 25 | 35 | |
| |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 10 | 20 | 30 | |

1.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2.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절대값이 같을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에 우선순위 부여.**
3.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3. 배점기준

| 구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비고 |
|--------|--------|-------------------|---------|------------------|
| 사업수행능력 | 30점 | 20점 | 10점 | 배점 = 총계 X 배점률 |
| 입찰가격 | 70점 | 80점 | 90점 | |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 | | |
|------|---------------|---|--------|-------------------|
| 가격내용 | 사업명 | | | |
| | 제안가격 | 금 | 원정(₩ | 원정) ※부가세포함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20.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 신청인 | 점용·사용 장소 | 목적 | 면적 | 사용기간 |
|-------------------|--|--------------------|--------|------|
| 여수시장 (섬박람회대책과) | 여수시 남면 두모리 945-19번지 및 남면 유송리 산334-1번지 지선 공유수면 | 여수 섬 요트투어 기반 구축 | 1,583㎡ | 15년 |
| 여수시장 (섬박람회대책과) | 여수시 남면 안도리 1190번지 및 남면 심장리 983-1번지 지선 공유수면 | 여수 섬 요트투어 기반 구축 | 1,657㎡ | 15년 |
| 여수시장 (섬박람회대책과) | 여수시 남면 연도리 1619-17번지 및 남면 연도리 산493번지 지선 공유수면 | 여수 섬 요트투어 기반 구축 | 1,583㎡ | 15년 |
| 여수시장 (섬박람회대책과) |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634-4번지 지선 공유수면 | 여수 섬 요트투어 기반 구축 | 1,453㎡ | 15년 |
| 여수시장 (섬박람회대책과) | 여수시 신월동 산272번지 및 돌산읍 금봉리 산1번지 지선 공유수면 | 여수 섬 요트투어 기반 구축 | 390㎡ | 15년 |
| 여수시장 | 여수시 화정면 하화리 | 여수 섬 요트투어 | 1,713㎡ | 15년 |

| | | | | |
|-----------|---|-------|--|--|
| (섬박람회대책과) | 294-5번지, 개도리 산742번지, 산274번지 지선 공유수면 | 기반 구축 | | |
|-----------|---|-------|--|--|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5. 10. 20. ~ 2025. 11. 10.(20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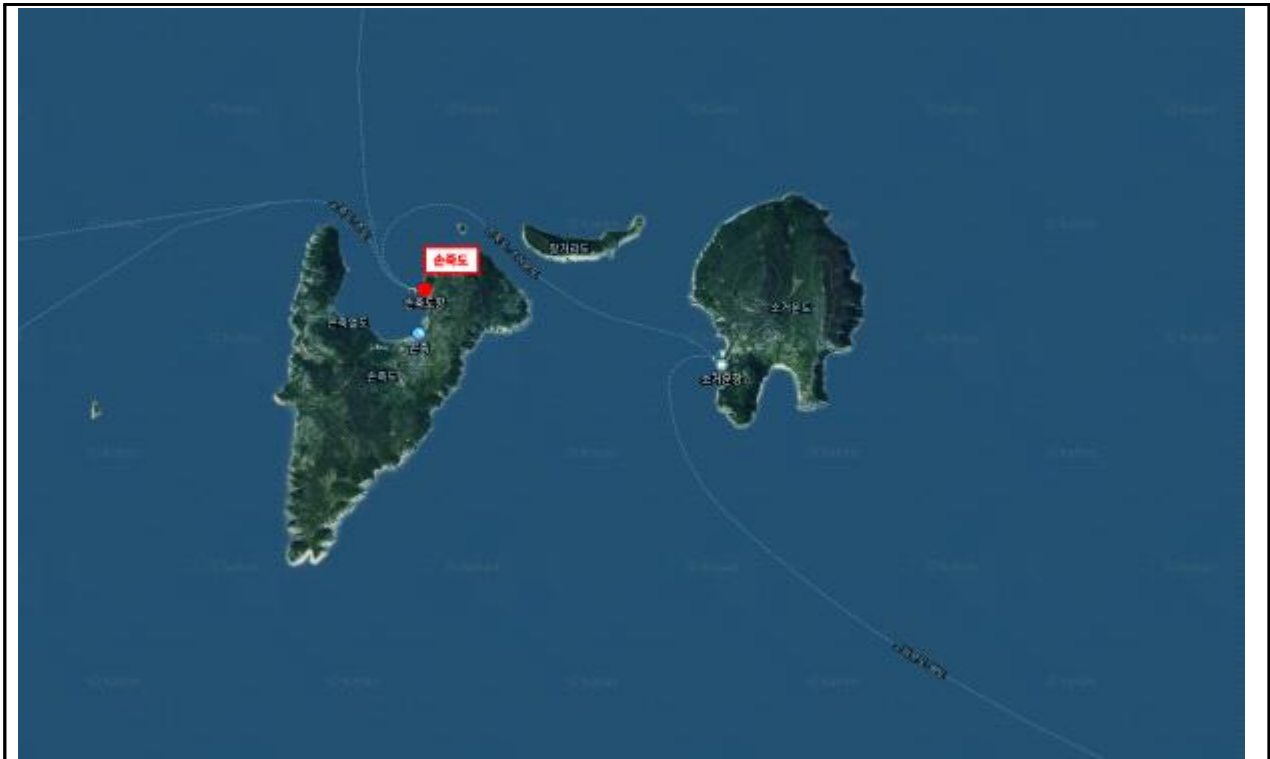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5. 10. 20. ~ 2025. 11. 10.(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출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jonghyun94@korea.kr)
- 담당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종현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20.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 신청인 | 점용·사용 장소 | 목적 | 면적 | 사용기간 |
|------------------|-----------------------------|-------------------------------------|-------|------|
|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 여수시 소호동 1181-4번지 지선 공유수면 |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 공사용 사설항로표지 설치 | 9.04㎡ | 2년 |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5. 10. 20. ~ 2025. 11. 10.(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5. 10. 20. ~ 2025. 11. 10.(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jonghyun94@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종현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20.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 신청인 | 점용·사용 장소 | 목적 | 면적 | 사용기간 |
|------------------|--------------------------------|--------------------|--------|------|
|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 여수시 남면 우학리 산168-3번지 지선 공유수면 | 남면 학동항 방파제 보강공사 | 1,440㎡ | 30년 |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5. 10. 20. ~ 2025. 11. 10.(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5. 10. 20. ~ 2025. 11. 10.(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jonghyun94@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종현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여수시 공고 제2025-305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우리 시 관내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일
여수시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폐수처리장 CAPA_UP공사

나. 건 축 주 : LX MMA

다. 시 공 자 : 하이테크엔지니어링

라. 사업개요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62-6번지

2) 대지면적 : 63,132.90㎡

3) 건축면적 / 높이 : 240.25㎡ / 13.30M

4) 용도/구조 : 콘크리트구조 / 공작물

5) 공사기간 : 2025. 7. ~ 2026. 7.

6) 공 사 비 : 3,980,000,000원

7) 안전점검 비용 : 3,000,000 (부가세 포함)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높이가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정기안전점검 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148호

나. 결정방법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별표]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
| 수행능력 | 10점 | 평점=평가점수 X 10% |
| 수행가격 | 90점 | |
| 합 계 | 100점 |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10. 22.(수) 10:00 ~ 10. 28(화)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부가세 포함 금액**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5. 10. 29.(수)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접수가 동일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5. 10. 31.(금) 17: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서식 2]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11. 3.(월) 10:00 ~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산업지원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공고문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공고문에 명시된 과업범위의 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내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아.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산업지원과(☎061-659-3795, 심하영 주무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4. 서약서 1부. 끝.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신청 사업명 | |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 | |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 수수료 없음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 사업수행능력

|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 | 비고 | | | | | | | | |
|-----------------------|------------|---|---------|----|-----|--------|-------------------|---------|-----|-----|-----|-----|--|
| 1. 참여 기술인 | 50 | 소 계 | | 50 | | | | | | | | | |
| | |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 | | | | | | | | | |
| | |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 | | | | | | | | | |
| | |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 | | | | | | |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 | | | | | |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40 | 소 계 | | 40 | | | | | | | | | |
|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 25 | | | | | | | | | |
| |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 | 15 | | | | | | | | | |
| 3. 점검·진단 평가결과 | 5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 | 5 | | | | | | | |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 · A- 이상 | | 5 | | | | | | | | | |
| | | · BBB- 이상 | | 4 | | | | | | | | | |
| | | · BB- 이상 | | 3 | | | | | | | | | |
| | | · B- 이상 | | 2 | | | | | | | | | |
| | | · CCC+ 이하 | | 1 | | | | | | | | | |
| | | · 미제출 | | 0 | | | | | | | | | |
| 총 계 | 100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25%;">1억원 이상</th> <th style="width: 25%;">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th> <th style="width: 35%;">5천만원 미만</th> </tr> <tr> <td>배점률</td> <td>30%</td> <td>20%</td> <td>10%</td> </tr> </table> | | | 구 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배점률 | 30% | 20% | 10% | |
| 구 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 | | | | | | | |
| 배점률 | 30% | 20% | 10% | | | | | | | | | |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 평가항목 | 세부기준 및 배점 | | | | 비고 |
|------|----------------|--------|-------------------|---------|----|
| |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 제안가격 |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70 | 80 | 90 | |
| |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65 | 75 | 85 | |
| |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60 | 70 | 80 | |
| |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55 | 65 | 75 | |
| |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50 | 60 | 70 | |
| |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45 | 55 | 65 | |
| |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40 | 50 | 60 | |
| |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35 | 45 | 55 | |
| |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 30 | 40 | 50 | |
| |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 25 | 35 | 45 | |
| |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 20 | 30 | 40 | |
| |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 15 | 25 | 35 | |
| |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 10 | 20 | 30 | |

1.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2.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절대값이 같을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에 우선순위 부여.**
3.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3. 배점기준

| 구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비고 |
|--------|--------|-------------------|---------|------------------|
| 사업수행능력 | 30점 | 20점 | 10점 | 배점 = 총계 X 배점률 |
| 입찰가격 | 70점 | 80점 | 90점 | |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 | | |
|------|---------------|---|--------|-------------------|
| 가격내용 | 사업명 | | | |
| | 제안가격 | 금 | 원정(₩ | 원정) ※부가세포함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5-305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취소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모집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착오 작성으로 인해 취소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여수시장

1.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2025-2903호
2. 사업명 : 여수 학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3. 취소공고일 : 2025. 10. 22.(수)
4. 취소사유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착오 작성에 따른 취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등 수정 후 재공고 예정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주)내일건설(김동균)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상암로 704
3. 법 인 등록번호 : 205411-0013138

| 업종명 | 등록번호 | 주력분야 | 등록일 |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여수-25-마-02 |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2025. 10. 22. |

2025년 10월 2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5-305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여수시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 학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한국토지신탁

다. 시 공 자 : 진흥기업(주)

라. 감 리 자 : (주)바소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학동 75-2번지 외 3필지

2) 대지면적 : 3,977.64㎡

3) 연 면 적 : 55,133.96㎡

4) 층 / 동 : 지하5층, 지상39층/2동

5) 용 도 : 공동주택(278세대), 근린생활시설

6) 공사기간 : 2025. 9. ~ 2029. 6.

7) 순공사비 : 108,323,471,000원

8) 안전점검 비용 : 166,057,000원(VAT 별도)

바. 건축허가일 : 2022. 9. 30.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구분 | | 점검항목 | 비고 |
|--------|-----|--------------------------------------|-----|
| 1종 시설물 | 건축물 | 1종 시설물 건축물 정기점검 | 3회 |
| | | 건축물 초기점검 | 1회 |
| | | 10m 이상 굴착공사 | 2회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2회 |
| 건설기계 | | 천공기(높이 10m이상) | 2회 |
| | | 항타 및 항발기 | 2회 |
| | | 타워크레인 | 28회 |
| 가설구조물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2회 |
| | |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2회 |
| | | 높이가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 2회 |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RCS) | 2회 |
| |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 2회 |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148호

나. 결정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 평가항목 | 기 준 | | | 심 사 방 법 |
|------|--------|-------------------|---------|-------------|
|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 수행능력 | 30점 | 20점 | 10점 | 배점=총계 X 배점률 |
| 수행가격 | 70점 | 80점 | 90점 | |
| 합 계 | 100점 | 100점 | 100점 | |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10. 22.(수) ~ 10. 27.(월)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부가세 별도 금액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5. 10. 29.(수)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점수가 동일 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5. 10. 30.(목) ~ 11. 3.(월) 16: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1) 참여기술자 관련(책임•참여)

- 안전점검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안전점검 실적(건수)
- 업무 중첩도: 공고일 기준 제출된 각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건수)
- 자격 여부: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2) 수행기관 관련

- 안전점검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금액)
- 업무 중첩도: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건수)

3)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행정제재 유무: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유무 확인서 1부.

5) 점검·진단평가 결과 처분 확인서

6)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 현황 확인서(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급),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각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 우측에 원본대조필을 날인 바람.(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11. 4.(화) 10:00~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과(☎061-659-41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2. 공사에정공정표 1부. 끝.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 사업수행능력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1. | 책임기술인 | 20 | 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한 경력증명서 첨부) (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될 수 있도록 형광펜 표기) | | | | | | | | | | | | |
| 참여 기술인 (30) | (1) 등급 | 4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및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만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구 분</td> <td style="width: 25%;">특 급</td> <td style="width: 25%;">고 급</td> <td style="width: 25%;">중 급 이하</td> </tr> <tr> <td>점 수</td> <td>4</td> <td>2</td> <td>1</td> </tr> </table> | 구 분 | 특 급 | 고 급 | 중 급 이하 | 점 수 | 4 | 2 | 1 | | | | |
| 구 분 | 특 급 | 고 급 | 중 급 이하 | | | | | | | | | | | | |
| 점 수 | 4 | 2 | 1 | | | | | | | | | | | | |
| | (2) 경력 | 8 |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경 력</td> <td style="width: 15%;">10년이상</td> <td style="width: 15%;">10년미만 9년이상</td> <td style="width: 15%;">9년미만 8년이상</td> <td style="width: 15%;">8년미만 7년이상</td> <td style="width: 15%;">7년미만</td> </tr> <tr> <td>점 수</td> <td>8</td> <td>7</td> <td>6</td> <td>5</td> <td>3</td> </tr> </table>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용역 | 경 력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점 수 | 8 | 7 | 6 | 5 | 3 |
| 경 력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 | | | | | | | | |
| 점 수 | 8 | 7 | 6 | 5 | 3 | | | | | | | | | | |
| | (3) 실적 (건수) | 8 |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용역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실 적</td> <td style="width: 15%;">9건이상</td> <td style="width: 15%;">9건미만 8건이상</td> <td style="width: 15%;">8건미만 7건이상</td> <td style="width: 15%;">7건미만 6건이상</td> <td style="width: 15%;">6건미만</td> </tr> <tr> <td>점 수</td> <td>8</td> <td>7</td> <td>6</td> <td>5</td> <td>4</td> </tr> </table> | 실 적 |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 점 수 | 8 | 7 | 6 | 5 | 4 |
| 실 적 |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 | | | | | | | | | |
| 점 수 | 8 | 7 | 6 | 5 | 4 | | | | | | | | | | |
| | 참여기술인 | 10 |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한 경력증명서 첨부) | | | | | | | | | | | | |
| | (1) 등급 | 2 | ○ 배점표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구 분</td> <td style="width: 33%;">특 급</td> <td style="width: 33%;">고 급 이하</td> </tr> <tr> <td>점 수</td> <td>2</td> <td>1</td> </tr> </table> | 구 분 | 특 급 | 고 급 이하 | 점 수 | 2 | 1 | | | | | | |
| 구 분 | 특 급 | 고 급 이하 | | | | | | | | | | | | | |
| 점 수 | 2 | 1 | | | | | | | | | | | | | |
| | (2) 경력 | 4 |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경 력</td> <td style="width: 15%;">8년이상</td> <td style="width: 15%;">8년미만 7년이상</td> <td style="width: 15%;">7년미만 6년이상</td> <td style="width: 15%;">6년미만</td> </tr> <tr> <td>점 수</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able>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용역 | 경 력 |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 점 수 | 4 | 3 | 2 | 1 | | |
| 경 력 |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 | | | | | | | | | | |
| 점 수 | 4 | 3 | 2 | 1 | | | | | | | | | | | |
| | (3) 실적 (건수) | 4 |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용역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실 적</td> <td style="width: 15%;">7건이상</td> <td style="width: 15%;">7건미만 5건이상</td> <td style="width: 15%;">5건미만 3건이상</td> <td style="width: 15%;">2건미만</td> </tr> <tr> <td>점 수</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able> | 실 적 |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3건이상 | 2건미만 | 점 수 | 4 | 3 | 2 | 1 | | |
| 실 적 |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3건이상 | 2건미만 | | | | | | | | | | | |
| 점 수 | 4 | 3 | 2 | 1 | | | | | | | | |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업체실적 | 30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용역수행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30) | (1) 건수 15 (2) 금액 15 | <p>○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 colspan="5">해당분야 실적(건수)</th> </tr> </thead> <tbody> <tr> <td>실 적</td> <td>15건 이상</td> <td>15건 미만 13건 이상</td> <td>13건 미만 11건 이상</td> <td>11건 미만 9건 이상</td> <td>9건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5</td> <td>14</td> <td>13</td> <td>12</td> <td>11</td> </tr> </tbody> </table> <p>○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 colspan="5">해당분야 실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실 적</td> <td>10억원 이상</td> <td>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td> <td>8억원 미만 6억원 이상</td> <td>6억원 미만 4억원 이상</td> <td>4억원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5</td> <td>14</td> <td>13</td> <td>12</td> <td>11</td> </tr> </tbody> </table> <p>[실적(건수 및 금액) 공통 적용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합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1건 수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건수) = 1건 x 0.7(참여지분율) = 0.7건 - 실적(금액) = 1억 x 0.7(참여지분율) = 0.7억원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건수) | | | | | 실 적 | 15건 이상 | 15건 미만 13건 이상 | 13건 미만 11건 이상 | 11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 점 수 | 15 | 14 | 13 | 12 | 11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금액) | | | | | 실 적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점 수 | 15 | 14 | 13 | 12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 적 | 15건 이상 | 15건 미만 13건 이상 | 13건 미만 11건 이상 | 11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 수 | 15 | 14 | 13 | 12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 적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 수 | 15 | 14 | 13 | 12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중첩도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 중첩도 (20) | (1)책임 기술인 | 6 | <p>○ 공고일 기준 제출된 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의 건수합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d>5건 미만</td> <td>5건 이상 7건 미만</td> <td>7건 이상 9건 미만</td> <td>9건 이상 12건 미만</td> <td>12건 이상</td>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6</td> <td>5</td> <td>4</td> <td>3</td> <td>2</td> </tr> </tbody> </table> | 구 분 | 5건 미만 | 5건 이상 7건 미만 | 7건 이상 9건 미만 | 9건 이상 12건 미만 | 12건 이상 | 점 수 | 6 | 5 | 4 | 3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5건 미만 | 5건 이상 7건 미만 | 7건 이상 9건 미만 | 9건 이상 12건 미만 | 12건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 수 | 6 | 5 | 4 | 3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참여 기술인 | 6 | <p>○ 공고일 기준 제출된 참여기술인의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의 건수합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d>4건 미만</td> <td>4건 이상 6건 미만</td> <td>6건 이상 8건 미만</td> <td>8건 이상 10건 미만</td> <td>10건 이상</td>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6</td> <td>5</td> <td>4</td> <td>3</td> <td>2</td> </tr> </tbody> </table> | 구 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 수 | 6 | 5 | 4 | 3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 수 | 6 | 5 | 4 | 3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수행 기 관 | 8 | <p>○ 공고일 기준 제출된 수행기관의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의 건수합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d>4건 미만</td> <td>4건 이상 6건 미만</td> <td>6건 이상 8건 미만</td> <td>8건 이상 10건 미만</td> <td>10건 이상</td>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6</td> <td>5</td> <td>4</td> <td>3</td> <td>2</td> </tr> </tbody> </table> <p>[업무중첩도 공통 적용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 여주시 외 전국 지자체 과업 포함 | 구 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 수 | 6 | 5 | 4 | 3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 수 | 6 | 5 | 4 | 3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신용도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도 (10) | 10 | <p>○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미제출 시 0점)</p>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A⁰이상</td> <td>A⁰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B⁰,B⁻이 상</td> <td>CCC⁺ 이하</td> <td rowspan="4">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⁰이상</td> <td>A2⁰미만 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r> <tr> <td>기업신용</td> <td>A⁰이상</td> <td>A⁰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B⁰,B⁻이 상</td> <td>CCC⁺ 이하</td> </tr> <tr> <td>점수</td> <td>10.0</td> <td>8.0</td> <td>6.0</td> <td>4.0</td> <td>0</td> </tr> </table> | | | | | | 회사채 | A ⁰ 이상 | A ⁰ 미만 BBB ⁻ 이상 | BBB ⁻ 미만 B ⁺ ,B ⁰ ,B ⁻ 이 상 | CCC ⁺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 ⁰ 이상 | A2 ⁰ 미만 A3 ⁻ 이상 | A3 ⁻ 미만 B ⁻ 이상 | C이하 | 기업신용 | A ⁰ 이상 | A ⁰ 미만 BBB ⁻ 이상 | BBB ⁻ 미만 B ⁺ ,B ⁰ ,B ⁻ 이 상 | CCC ⁺ 이하 | 점수 | 10.0 | 8.0 | 6.0 | 4.0 |
| 회사채 | A ⁰ 이상 | A ⁰ 미만 BBB ⁻ 이상 | BBB ⁻ 미만 B ⁺ ,B ⁰ ,B ⁻ 이 상 | CCC ⁺ 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 | A2 ⁰ 이상 | A2 ⁰ 미만 A3 ⁻ 이상 | A3 ⁻ 미만 B ⁻ 이상 | C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신용 | A ⁰ 이상 | A ⁰ 미만 BBB ⁻ 이상 | BBB ⁻ 미만 B ⁺ ,B ⁰ ,B ⁻ 이 상 | CCC ⁺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10.0 | 8.0 | 6.0 | 4.0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5. | 신용도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유 기술인 (10) | 10 | <p>○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시·도지사가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사항(기술인력 내용 포함)확인 공문 별도 제출 (미제출 시 0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인원수</th> <th>배 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특급 기술자</td> <td>3인 이상</td> <td>6점</td> </tr> <tr> <td>2인</td> <td>2점</td> </tr> <tr> <td>1인</td> <td>1점</td> </tr> <tr> <td rowspan="4">고급 기술자 이하</td> <td>7인 이상</td> <td>4점</td> </tr> <tr> <td>5인 이상</td> <td>3점</td> </tr> <tr> <td>3인 이상</td> <td>2점</td> </tr> <tr> <td>2인 이하</td> <td>1점</td> </tr> </tbody> </table> | | | | | | 등 급 | 인원수 | 배 점 | 특급 기술자 | 3인 이상 | 6점 | 2인 | 2점 | 1인 | 1점 | 고급 기술자 이하 | 7인 이상 | 4점 | 5인 이상 | 3점 | 3인 이상 | 2점 | 2인 이하 | 1점 | | |
| 등 급 | 인원수 | 배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급 기술자 | 3인 이상 | 6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인 | 2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인 | 1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급 기술자 이하 | 7인 이상 | 4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인 이상 | 3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인 이상 | 2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인 이하 | 1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을 하는 업체는 신청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수행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
로 선정한다.

4. 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용역수행 또는 이와 관련 발주청 임·직원으로 관리감독 한 경우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5. 수행기관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6.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2. 수행가격

| 평가항목 | 세부기준 및 배점 | | | 비고 | |
|------|----------------|-------------------|---------|----|--|
|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
| 제안가격 |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70 | 80 | 90 | |
| |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65 | 75 | 85 | |
| |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60 | 70 | 80 | |
| |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55 | 65 | 75 | |
| |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50 | 60 | 70 | |
| |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45 | 55 | 65 | |
| |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40 | 50 | 60 | |
| |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35 | 45 | 55 | |
| |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 30 | 40 | 50 | |
| |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 25 | 35 | 45 | |
| |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 20 | 30 | 40 | |
| |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 15 | 25 | 35 | |
| |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 10 | 20 | 3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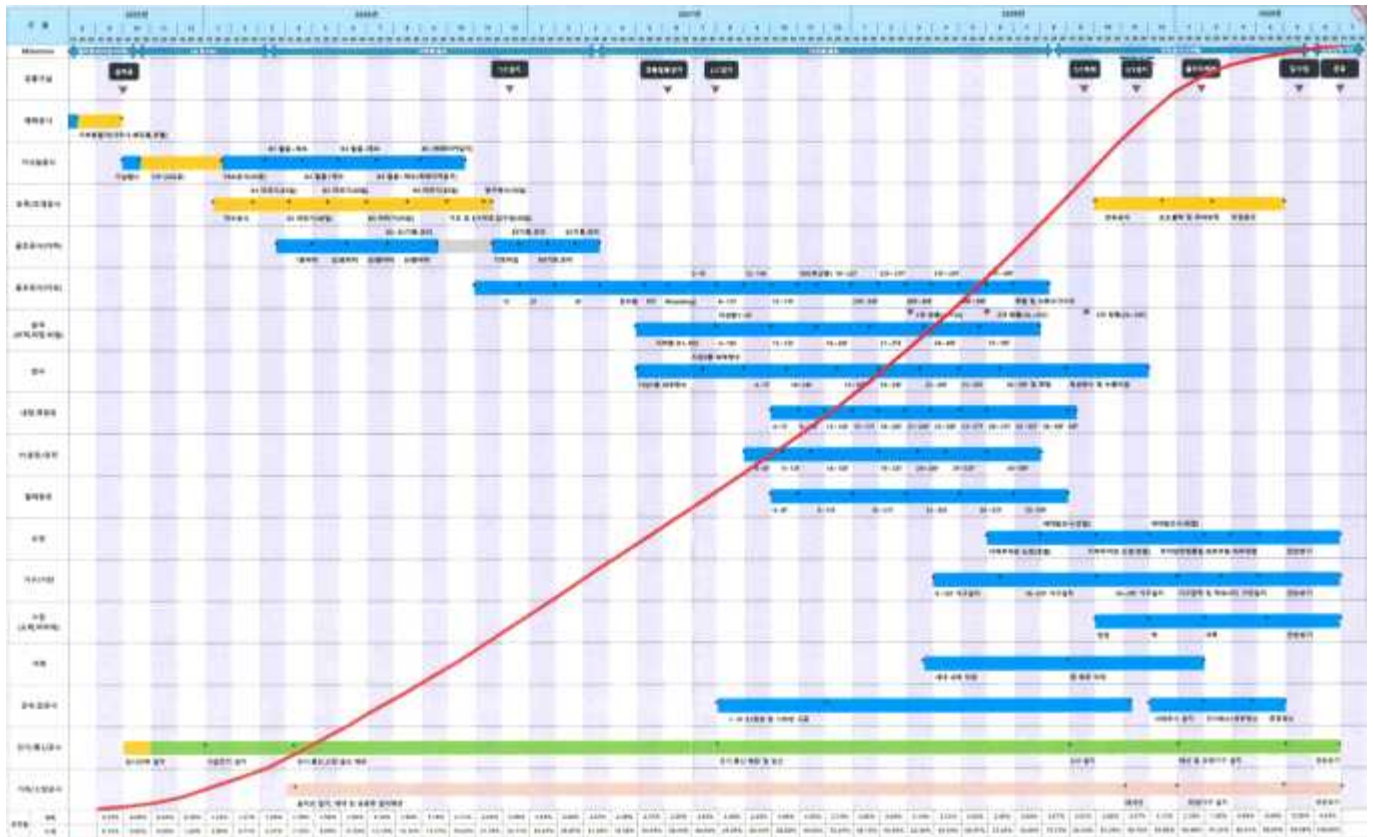
1.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2.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절대값이 같을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에 우선순위 부여
3.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 평가항목 | 기 준 | | | 심 사 방 법 |
|------|--------|-------------------|---------|-------------|
|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 수행능력 | 30점 | 20점 | 10점 | 배점=총계 X 배점률 |
| 수행가격 | 70점 | 80점 | 90점 | |
| 합 계 | 100점 | 100점 | 100점 | |

[붙임2]

공사에 성공정표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 | |
|-----|------------|--------|
| 사업명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구분 | 분야 | 성명 | 생년월일 | 등급 | 자격번호 | 소속회사 | 비고 |
|-----------|-----|----|----|------|----|------|------|----|
| 참여 기술인 | 책임 | | | | | | | |
| | 참여 | | | | | | | |
| | 비평가 | | | | | | | |
| | 비평가 | | | | | | | |
| | 비평가 |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 |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자기평가서 1부 3. 가격제안서 1부 4. 서약서 1부 | 수수료 없음 |
|----------------------|---|---------------|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 | | |
|------|---------------|---|--------|------------|
| 가격내용 | 사업명 | | | |
| | 제안가격 | 금 | 원정(₩ |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5]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1. 참여기술인 목록

| 구 분 | 성 명 (생년월일) | 학력 (학위) | 기술자 등급 | 직무 (전문) 분야 | 자 격 증 | | 해당 분야 경력 | 관련교육 이수여부 |
|------------|-------------------|--------------------|-----------|------------------|-------------|----------------------|----------------|--------------|
| | | | | | 종류 | 등록번호 (취득일) | | |
| 책 임 기술인 | ○○○ (00.00.00) | ○○대 대학원 (박사) | 특급 | | 건축구조 기술사 | 000000 (00.00.00) | 00년 00개월 | 이수 |
| 참 여 기술인 | | | | | | | | |

- ※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함.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
2.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건축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등) 사본 첨부.

2. 책임 기술인 실적

| 일반 사항 | 성 명 | 기술자등급 | | 자격종류 | | |
|---------------|-------------------------|----------|--------|----------------|-----|--|
| | | 소 속 | | | 직 위 | |
| 경력 요약 | 정기안전.정밀안전.초기공사재개 전 점검 등 | | | 00건 / 00년 00개월 | | |
| 경 력 사 항 | | | | | | |
| 용 역 명 | 참여기간 | | 반영 (일) | 발주청(발주자) | 비 고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총 계 | | | | | | |
| 000 정밀안전점검 용역 | 00.00.00 | 00.00.00 | | | | |
| 000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 | | |

※ 1. 참여분야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입

2. 경력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경력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반영일의 합계

3. 경력사항

1) 연차순으로 기재

2) 참여기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참여기간'

3) 반영(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인정일'

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고 경력증명서 상 해당 항목에는 형광펜으로 구분 표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4.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3. 참여기술인 실적

| 일반 사항 | 성 명 | 기술자등급 | | 자격종류 | | |
|---------------|-----|-------------------------|----------|--------|----------------|-----|
| | | 소 속 | | 직 위 | | |
| 경력 요약 | | 정기안전.정밀안전.초기공사재개 전 점검 등 | | | 00건 / 00년 00개월 | |
| 경 력 사 항 | | | | | | |
| 용역명 | | 참여기간 | | 반영 (일) | 발주청(발주자) | 비 고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총 계 | | | | | | |
| 000 정밀안전점검 용역 | | 00.00.00 | 00.00.00 | | | |
| 000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 | | |

- ※ 1. 참여형태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입
- 2. 인정실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점검 실적으로 공고일 현재 전체 과업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실적만 인정(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3. 연차순으로 기재
- 4. 용역기간 및 금액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용역 기간(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 5. 증빙서류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등 기재)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 2) 1)호 이외의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계약내역 포함),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시공사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받은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등
- 6.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서식6]

수행기관 용역 수행실적

| 업 체 명 | | | | | | | | | |
|-----------------|----------------------------------|------------------|-----------------------|---------------|---------------|-----------------|-----------------|--------------|-----------------------|
| 실적 요약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 건 수 | | 건 | | | | |
| | | | 금 액 | | 백만원 | | | | |
| 유 사 용 역 실 적 사 항 | | | | | | | | | |
| 분야 | 년도 | 용 역 명 | 용역 기간 | 준공금액 (백만원) | 실적금액 (백만원) | 도급 비율 (%) | 실적 건수 (건) | 발주청 (발주자) | 비 고 (증빙서류 page) |
| 총계 | | | | 000 | 000 | 00 | 0.0 | | |
| 정기 | '00 | 000 정기안전점검 용역 | 00.00.00 ~00.00.00 | 000 | 00% | 00 | 0.0 | | |
| 정밀 | | | | | | | | | |
| 초기 | | | | | | | | | |
| 공사 재개 전 | | | | | | | | | |

-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연차 준공된 용역은 최종차수 준공시 1건으로 인정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2. 준공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유사용역의 인정실적 범위 및 증빙서류는 참여기술인과 같다.
3. 건수는 용역단위로 산정(구조물 단위 아님)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전체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발주자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증빙서류에 해당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첨부생략 가능)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도급비율(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 1) 실적건수 : 1건 × 도급비율(%)
- 2) 실적금액 : 준공금액 × 도급비율(%)

[서식7]

업 무 중 첩 도

1. 참여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 구 분 | 성 명 | 용역업무 참여 현황 | | | | |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
|------------|-----|------------|-----|----------|-----------------------|-------------|-----------------------|
| | | 용역명 | 발주청 | 참 여 기 간 | | | |
| | | | | 분 야 | 참여기간 | 잔여일수 (일) | |
| 책 임 기술인 | | | | | 00.00.00 ~00.00.00 | 00일 | |
| | | | | | | | |
| 합 계 | | | | 일 | | | |
| 참 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일 | | | |

2. 수행기관의 업무 중첩도

| 용역명 | 용역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 주 처 | 참여분야 | 잔여기간 (일) | 비 고 |
|------------|-----------------------|---------------|-------|------|-------------|-----|
| | 00.00.00 ~00.00.00 | | | | 00일 | |
| 합 계 | 건 | | | | 일 | |

- ※ 1.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
 2. 참여기간 :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3.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의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4.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만 기재할 것.

[서식8]

재 정 상 태 건 실 도

| 회사명 | 평가받을 항목 | 신용평가등급 | 비 고 |
|-----|---------------------------|--------|-----|
|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1) | | |

- ※ 1. 신용정보(평가)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나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도로 평가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 면허 번호 | 연장 허가 번호 |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 면적 (ha) | 어장 위치 | 면허기간 | 연장허가 기 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10354 | 2025- 84 | 마을어업 | 78 | 화정 하화 | 2015.11.08. 2025.11.07. | 2025.11.08. 2035.11.07. | 여수시 화정면 하화리 | 하화어촌계 | |
| 10359 | 2025- 85 | 마을어업 | 60 | 남면 두모 | 2015.11.08. 2025.11.07. | 2025.11.08. 2035.11.07. | 여수시 남면 두모리 | 두모어촌계 | |
| 10361 | 2025- 86 | 마을어업 | 10 | 화양 나진 | 2015.11.08. 2025.11.07. | 2025.11.08. 2035.11.07. |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 소장어촌계 | |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5. 10. 23.

여 수 시 장